

The Prison Libraries in Korea

韓國의 교도소 도서관

崔 錫 斗
弘益大圖書館司書

1. 교도소 圖書館의 意義

1.1. 교도소와 圖書館

교도소는 刑務所라는 명칭을 1962년 2월 17일 각령 487호로 개칭한 것이며 형식적 의미로는 “懲役刑, 禁錮刑 및 勞役場留置와 拘留處分을 받은 受刑者 또는 被疑者, 刑事被告人으로서 令狀의 執行을 받은者로 收容하는 場所⁽¹⁾”이지만 實質的 概念으로는 行刑法 理念으로 볼 때 “교도소는 受刑者를 隔離保護하며 矯正教化하여 進전한 國民思想과 勤勞精神을 함양하고 技術教育을 실시하여 社會에 복귀하게 하는 場所”를 意味하며, 과거의 應報刑 思想인 기본인권을 박탈하고 犯罪人이 行한 犯罪에 相應하는 苦痛을 주는 場所가 아닌 것이다.

우리 나라가 解放後에 應報刑思想에서 民主憲法精神에 수용하는 民主刑政으로서의 革新的인 교체와 함께 受刑者가 자기의 지은 罪를 認定하고 規律을 철저히 지켜 교도소에 滿期까지 머무는 것이 有用한 市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安全하고 바람직하다는 복귀의 觀點을 止揚하고 社會學, 心理學 등을 기초로 한 行動科學과 刑事學(犯罪學; Criminology)의 발달로 인하여 犯罪는 한 個人의 自由意思에 의하여 反社會的인 行動이 스스로 選擇·決定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個人의 先天的, 後天的, 心理的, 生理的, 社會的인 여러 요소에 의하여 決定되어지므로 犯罪는 個人의 責任으로 들릴 罪惡이 아니라 社會病理的 現象의 하나이며 犯罪人도 惡人으로 처벌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라 社會適應에 실패한 不幸한 同胞로서 따뜻한 保護와 다시 社會에 適應할 機會를 주어야하는 人間으로서 踴躍하는 教育刑思想으로 발전하여 교도소는 명실공히 刑事司法制度인 동시에 社會事業의 중요한 分野가 되었으며 犯罪人을 教化·개선·사회복귀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事業을 펴는 矯正所로서 발전한 것이다.

교도소의 矯正事業(Correctional Services) 中에는 施設外矯正(예를 들면 집형유예, 가석방제도 등의 보호 관찰제도)과 施設內矯正(就役, 教育, 教誨, 讀書, 體育

등) 및 更生保護制度가 있으나 施設外矯正은 12.5%⁽²⁾ 정도일 뿐 그 외에는 거의 施設內矯正으로 교정의 主活動은 施設內矯正으로 集中된다고 할 수 있으며 시설 내 교정의 各分野는 圖書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00年前 1872년 7월 런던에서 열린 International Penitentiary Congress에서 讀書가 수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라는 質問에 17개 유럽대표와 美國, 멕시코 대표 등이 응답한 要旨는 다음과 같다. “讀書는 수감자에게 有益한 영향을 준다. 敎訓을 주며 일반적인 知識의 範圍를 넓히며 그들의 實際的인 知識을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惡을 저지르지 않는 自己尊敬을 깨치게 하고 勞動이나 道德的인, 그리고 知的인 娛樂 및 讀書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激烈한 상상을 조용하게 하고 貴重한 情熱과 罪意識에 의해서 鼓舞되는 高尚한 理想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讀書는 罪人의 마음을 풀어주며 倦怠의 感情과 부정적의 傾向을 除去함으로써 改善 前進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³⁾ 이와같이 圖書의 필요성을 느낄 各國의 교도소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교도소는 圖書館(室)을 만들고 圖書의 蒐集과 閱覽에 힘써온 것이다.

1.2. 교도소圖書館의 特性

교도소 圖書館은 特殊圖書館이다. 特殊圖書館이라 함은 봉사대상이 특수층이며 資料의 構成이 特殊하다는 것을 意味한다.⁽⁴⁾ 이는 곧 일반 도서관보다도 主題包括 範圍와 봉사하는 讀者의 領域이 좀 더 特殊화된 형태이며⁽⁵⁾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圖書館의 위치가 私企業體나 產業組織, 政府附屬機關 등에 위치하며 主題의 範圍가 醫學, 工學, 藝術등으로, 資料의 範圍가 地圖, 그림, 音盤 등으로 제한되며 利用者와 奉仕의 대상이 특수한 집단과 계층이며 Staff, Space, Collection 등이 小規模이며 主로 情報機能에 充實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⁶⁾ 교도소 도서관도 이 범주에 속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의 特殊圖書館은 어느정도 特殊하게 分化된 했지만 主題의 範圍나 藏書의 構成 및 閱覽에 있어서 어느정도의 伸縮性있는 제한을 가한 것인데 반하여 교도소 圖書館의 主題의 範圍나 藏書의 構成 및 閱

覽은 “禁止”로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특수화된 圖書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어린이 圖書館이나 “불가능”으로 제한 되는 성인·농아도서관과 흡사한 性格을 보이고 있다.

1.2.1. 藏書構成의 制限

自由地域社會에서의 圖書館은 大衆이 利用할 수 있는 知識과 娛樂의 集積所이다. 그러나 이 大衆이라는 말 자체가 교도소 圖書館, 自由地域社會 圖書館 2개의 圖書館을 비교 구분해 준다. 後者는 나이, 性別, 人種的 宗教的, 政治的 모두에 拘礙됨이 없이 圖書가 選擇되어 構成되지만 前者는 主題의 範圍나 讀者의 要求가 禁止 및 制限으로서 制限된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현재에는 “反社會的인 圖書, 兇器, 手刀, 明確한 性的 記述圖書, 人種上의 醜聞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圖書”를 제한하고 있지만 “成人교도소 및 감화원圖書館의 目的 및 基準”(Objectives and Standards for Libraries in Adult Prisons and Reformatories)의 1941년 개정 편에는 “病的인 著作, 性, 反社會的인 것, 罪를 짓는 길, 法的 不敬, 政府 등을 강조하는 圖書, 聯邦法, 州法, 解剖著作, 신앙고백 등은 禁다.”⁽⁷⁾라고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藏書構成에 있어서의 제한은 教化上 特別 不適當하다고 認定되는 事由가 없는 圖書⁽⁸⁾라고 規定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성인교도소의 경우,

- (가) 國體, 國是에 위배되는 內容
- (나) 犯罪 및 犯則行爲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것
- (다) 性的 刺戟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것
- (라) 기타 特別 教化上 不適當하다

고 인정되는 것은 금지하며(법무부령, 1964. 9. 1. 看守所 열독 도서관리 요강——이하 要綱이라 한다——第2條, 1, 2項), 少年院의 경우는 “矯正, 教化, 情緒純化, 學業에 도움이 되는 것만 비치한다”로 제한하고 있다.

1.2.2. 圖書閱覽의 制限

圖書의 閱覽은 장서의 구성에서 금지 내지 제한되는 것은 물론 금지된다. 뿐만아니라 우리 나라의 경우 所藏하고 있고 제한되지 않은 圖書라고 할지라고 既決, 未決, 수감자의 급수⁽⁹⁾, 취역장소, 思想, 趣味, 성행, 行刑成績, 장애성, 學歷, 文盲의 정도(수감자의 平均 學歷은 無學내지 國民學校 中退·卒이 男子인 경우 47.1%⁽¹⁰⁾ 女子인 경우 73%⁽¹¹⁾에 달한다)등에 따라 私有圖書, 教化圖書의 열람권수, 種類, 방식, 時間이 달라진다. 자세한 설명은 2.5圖書의 閱覽에서 할 것이다.

2. 우리 나라의 교도소 圖書館

우리 나라의 교도소는 少年院 10個所, 成人교도소 19

個所, 특수교도소 3個所 포함 32個所의 교도소가 있다.⁽¹²⁾ 이들 교도소에는 거의 전부가 圖書館형태의 集書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교도소는 단권이상의 圖書를 保有管理하고 있다. 圖書의 保管管理는 敎務課長(敎化 담당과장)이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敎務課의 교정적으로 圖書擔當係員을 두고 있다. 組織圖表上的 위치를 보면 법무부장관, 그아래 법무부차관, 그아래 교정국 그아래 교정과, 그아래 교도소(장)이 위치하며 그아래 교무과, 서무과, 제호과, 작업과, 용도과, 의무과, 구치과가 있으며·교무과 敎務課長아래에 교정직(5급甲, 乙)이 위치하게 된다.

2.1. 교도소 圖書館 設置의 法的인 근거

교도소 圖書館設置의 직접적인 法的根拠는 보이지 않지만, 間接的인 根拠로서는(行刑法 第33條) (圖書閱覽)受刑者가 圖書의 閱覽을 申請하는 때에 特別 不適當하다고 認定되는 事由가 없는 限 當該所長은 이를 許可하여야한다.

(行刑法 第34條)敎育의 科目, 時間과 圖書에 關하여 필요한 事項은 法務部長官이 定한다.

(少年院처우규정 第17條) (圖書備置) 院長은 院生의 敎化에 필요한 圖書를 備置하고 이를 院生에게 讀도록 하여야 한다(大統領令 제4632호, 1970. 2. 16).

이외에 법무부령, 1964. 9. 1 在所者 閱覽圖書 管理要綱全文 15條가 있다.

2.2. 교도소 圖書館所藏 圖書現況

우리 나라의 교도소 도서관소장 도서는 2가지의 種類가 있다. 私有圖書와 敎化圖書가 그것이다. 私有圖書는 통상 私冊이라하며 在所者가 個人用으로 가지고 있는 책으로 家族이나 親知들이 반입하여 敎務課長의 檢閱을 畢하고 檢閱畢을 표시하는 보안인과 계원인의 朱印을 찍고 사책 대장에 記入한 後 個人에게 돌려준 책을 말하며 敎化圖書는 통칭 官本이라하며 法務部에서 수령한 것이나 寄贈, 自體購入된 私有圖書이외의 책으로 관본대장(圖書原簿)에 등록된 圖書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1969. 12. 31 현재의 私有圖書, 敎化圖書의 교도소 別類別 所藏圖書現況은 다음과 같다. (表 16面)

1969년 12월 31일현재 私有·敎化圖書가 53,748冊이며 재소자數 35,455명⁽¹³⁾으로 1人當 1.5冊이며 이중 宗敎書籍이 2/5를 차지하고있는 것이 특기할 만 하다. 少年院의 경우 圖書統計는 나오지 않았으나 필자가 직접조사할 수 있었던 서울소년원의 경우 1974년 10월 23일 현재 宗敎 40, 文學 700, 敎養 832, 數學, 歷史, 地理科學 126, 實業 11, 計 1,709冊을 所藏하고 있으며 在所院生 1,209명으로 1人當 1.4冊정도로 成人교도소와 비슷하나 文學, 敎養書籍이 90%를 차지하고있는 것이 특기 할만하다.

(私有圖書)

資料：법무행정 1970

교도소별	서적별	종 교 문 학 교 양 수 학 · 과 학 역 사 · 지 리 법 물 실 업 기 타 합 계														
		종	교	문	학	교	양	수 학 · 과 학 역 사 · 지 리	법	물	실	업	기	타	합	계
서울구치소	소	620		80		100		450		200		20		1,200		2,670
안양	양	280		60		80		280		100		31		400		1,231
대전	전	180		110		90		340		95		50		800		1,665
부산	산	320		90		110		420		110		70		500		1,602
대순	구	520		100		130		370		156		90		1,000		2,366
수원	친	290		40		70		90		100		38		800		1,428
광주	원	380		90		120		300		100		70		700		1,760
영등포	주	160		70		80		110		150		50		450		1,070
영등포	포	110		88		74		69		24		33		956		1,365
영등포	주	180		40		60		72		24		33		956		1,365
영등포	친	210		40		40		50		17		27		300		648
영등포	주	230		55		55		48		51		34		400		873
영등포	산	230		30		37		59		57		32		410		855
영등포	부	211		42		67		52		44		47		520		983
영등포	포	220		37		30		47		90		20		420		834
영등포	친	190		30		40		59		61		40		500		920
영등포	친	145		37		37		47		41		11		200		518
영등포	동	139		91		56		30		39		20		300		675
영등포	주	130		57		47		20		27		28		340		609
영등포	주	127		49		31		19		58		30		410		724
영등포	산	56		29		21		19		19		21		510		675
영등포	도	11		1		2		1		3		6		40		64
영등포	구치소	49		16		8		14		8		7		70		172
합	計	4,988		1,232		1,385		2,962		1,544		795		11,882		24,788

(敎化圖書)

교도소별	서적	종 교 문 학 교 양 수 학 · 과 학 역 사 · 지 리 법 물 실 업 기 타 합 계														
		종	교	문	학	교	양	수 학 · 과 학 역 사 · 지 리	법	물	실	업	기	타	합	계
서울구치소	소	1,599		648		100		780		81		52		417		3,677
안양	양	1,428		123		270		71		18		24		155		2,089
대전	전	1,057		80		350		30		30		4		306		1,857
부산	산	319		240		280		130		88		108		28		1,193
대순	구	1,620		380		180		81		49		59		24		2,393
수원	친	219		110		160		11		18		8		14		540
광주	원	947		494		180		27		48		85		186		1,966
영등포	주	1,800		180		190		62		49		11		44		2,336
영등포	포	700		112		170		7		14		16		50		1,069
영등포	주	1,901		182		150		8		11		30		208		2,490
영등포	친	802		28		200		52		5		25		166		1,278
영등포	주	642		101		200		14		21		31		52		1,061
영등포	산	872		78		120		48		7		10		17		1,152
영등포	부	683		70		95		2		13		15		180		1,058
영등포	포	500		116		190		29		15		39		50		939
영등포	친	242		174		120		81		31		8		81		727
영등포	친	198		211		320		31		25		13		50		848
영등포	동	90		121		140		64		7		24		96		542
영등포	주	97		164		140		52		21		18		123		615
영등포	주	120		87		120		24		14		12		16		393
영등포	산	110		114		120		28		12		17		147		548
영등포	도	60		18		25		8		7				21		139
영등포	구치소	40														40
합	計	16,046		3,830		3,820		1,640		584		609		2,431		28,960

2.3. 圖書의 蒐集

圖書의 蒐集方法은 購入, 寄贈, 法務部에서 수령, 私有圖書制度로 나눌 수 있다. 私有圖書는 受刑者의 家族 및 親知의 반입 혹은 本人의 購入(作業의 상여금⁽¹⁴⁾이나 영치금품을 사용한다)圖書로서 반입되면 영치계에서 敎務課로 이송된다. 이 재소자열독도서취급에 관한 사무는 敎務課長이 행하며 열독도서의 검열도 敎務課長이 주관한다.(要綱, 第3條) 단 보안상 필요에 의한 검색은 보안과장이 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要綱 第4條) 검열에 통과되지 못한 圖書는 영치계로 반송하여 釋放時나 가족방문時에 反換한다. 私有圖書의 반입수는 교도소에 따라 多少 差異가 있으나 하루 20—30권이 보통 반입되고 있다. [寄贈]은 상당한 몫을 차지한다. 寄贈은 各 宗教團體나 교도소후원회(일종의 종교단체), 雜誌社 등지가 社會團體 등이 하며 이 寄贈圖書의 主類를 이루는 主題 宗教에 관한 書籍들이다. [購入圖書]는 政府豫算中 敎化費에서 圖書購入費를 할당하여 購入하며 할당되는 圖書購入費의 과소로 실제의 購入圖書는 극소량에 불과하다. [수령도서]는 法務部에서 敎化에 적합한 圖書를 一括購入하여 各 교도소에 배부하며 교도소는 이를 受領한다. 이외의 방법으로는 공식적이 아닌 것이지만 圖書擔當係員의 의욕과 적극적인 活動으로 公共圖書館(중도시圖書館)의 移動文庫를 유치하여 一時的인 敎化用 圖書로 利用하는 곳도 있다. 定期刊行物은 宗教月週間誌를 포함하여 15種정도 비치하며 新聞은 국내 주요전국지를 비치하고 또 各 교도소의 印刷工場에서 인쇄한 種 정도의 교도소 新聞이 비치된다.

2.4. 圖書의 整理

購入, 配付, 寄贈된 圖書는 受書되는 즉시 保安檢閱을 하고 圖書原簿에 “관본”이라는 朱印을 찍고 要綱 第5條(圖書의 保管管理)에 의하여 宗教(가), 敎養(나) 實業(다), 政治學(라), 經濟學(마), 法律學(바), 社會學(사), 文學(아), 科學(자), 地學(차), 史學(카), 語學(타), 辭典(파), 經典(하), 기타(까)의 15개 分野로 分類하고⁽¹⁵⁾ 그 以下는 가₁, 가₂……나₁, 나₂…… 등의 수입순이나 도서담당자의 임의로 1 連번호를 주어 細分하는 것이 보통이다. 分類가 끝나면 閱讀證을 첨부하여 書齋에 비치하고 敎務課長은 貸與할 圖書目錄을 作成하여 月一回以上 定期的으로 就役場 및 舍房에 回覽시키며 작업훈련상 特別 필요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그 目錄을 作成하여 재소자에게 회람시키기도 한다.(要綱, 第10條) 圖書目錄은 分類番號, 書名, 著者를 記入하여 印刷한다.

2.5. 圖書의 閱讀

圖書의 閱讀은 未決, 既決, 급수, 學歷, 思想, 趣味,

성행, 行刑成績 및 장래성등에 따라 閱讀時間과 資料의 種類에 있어서 차이를 두고 있다.(要綱, 第6條)

未決은 언제라도 閱讀申請을 할 수 있으며 대기상태이므로 언제나 讀書를 할 수 있는 반면 既決은 아침시에 기상하여 9:30—5:30까지 就役工場에서 作業을 하므로 圖書閱讀申請 및 閱讀은 公休日을 除外하고 쉬는 時間, 점심시간, 그리고 밤에만 할 수 있게 된다. 재소자로부터 圖書貸與申請이 있을 때에는 담당직원은 “도서열독신청서”에 소정의 기재를 한 後 敎務課長에게 提出하는 敎務課長은 同申請書에 의거 “도서기록카드” 및 “도서열독허가증”에 소정의 기재를 한 後 本人에게 貸與하게 된다.

私册을 交付할 때에는 “私册臺帳”에 소정의 記를 하여 그 所在를 明確히 하고 貸與하게 되며 領置中에 있는 私册의 交付節次는 前者의 貸與節次에 準하지만, 敎化上 特別 필요하다고 認定되는 刊行物로서 多數人員에게 同時에 열독시켜야 할 圖書는 前記의 節次없이 配付 閱讀시킬 수 있다.(要綱, 第12條, 1.2.3.4.5項)

수감자 한 사람이 所持할 수 있는 圖書의 卷數는 1, 2급수 및 獨居受容者에게는 5卷까지 許容하며, 3급수 이하 및 混居受容者일 경우에는 3卷까지 許容하며 被疑者 및 刑事被告人은 5卷까지 許容한다.(要綱, 第8條, 1.2.3項) 所持期間은 1個月以內로 하며 私册인 경우나 特別 필요하다고 認定되는 경우에는 이 期間을 伸縮할 수 있다. 그리고 辭典, 經典, 被敎育者의 學習參考書는 同期間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이들을 포함하여 10卷을 超過所持할 수 없다. 家族 또는 外部로 부터의 차입에 의하여 10卷을 超過했을 때는 즉시 超過分을 領置保管시켜야 한다. 수감자는 就役工場에서 木工, 鐵工 등의 28個工場⁽¹⁶⁾에서 技能工의 훈련을 받으며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기 때문에 圖書의 貸與方法은 圖書目錄을 各工場에 배부하여 열독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圖書를 舍房이나 工場으로 가지고가는 方法과 시간나는대로 도서관(실)에 와서 찾아가는 方法이 있으나 수감생활의 制限사정으로 完할지 못하여 意欲있고 敎化力있는 圖書擔當係員은 閱讀希望豫想圖書를 뽑아 各工場의 責任者에게 手실련씩 맡기는 교도소도 있다. 재소자로부터 圖書購入의 委託(希望圖書申請)이 있을 때에는 敎務課長이 價格과 册子檢討後에 敎化上 適當하다고 認定되는 것에 限하여 1 정한 수속을 끝낸 후 購入閱讀시킨다.(要綱, 第11條)

열독이 끝난 圖書나 열독期間이 滿了된 圖書는 지체없이 반납시켜야 한다. 또 釋放기타 反納시켜야 할 事由가 發生하였을 때에는 期間滿了前이라도 反納해야 한다.(要綱, 第7條) 反納의 節次는 재소자로부터의 圖書反納申請을 받은 담당직원은 圖書反納申請書(도서

열독신청서와 양식이 같다)에 소정의 기재를 한 後 敎務課長에게 提出하면 敎務課長은 “도서기록카드” 및 “도서열독허가증”을 정리한 後 要綱에 따라 管理保管한다. (要綱, 第13條, 1.2項) 反納된 圖書가 전염병 또는 그 우려가 있는 患者가 열독한 圖書일 경우에는 醫務課長으로 하여금 防疫上의 필요한 措置를 취한다. (要綱, 第14條) 新聞의 열람은 1급수에게만 許容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少年院의 경우를 보면 보통 圖書의 貸出은 擔任先生의 申請에 의하여 “圖書貸與臺帳” 기록후에 貸出하며 貸出期間은 1週日, 貸出時間은 09:00—17:00으로 하고 貸出圖書의 汚染, 破損, 紛失은 擔任先生이 책임을 지고있다. 성인교도소의 경우 圖書를 汚損 또는 毀損 하였거나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는 도서의 열독허가를 取消한다. (要綱, 第15條) 그리고 1次 열독하여 反納한 圖書는 3個月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재열독을 許可할 수 없다. 단 敎化上 필요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이 期間內일지라도 재열독을 許可할 수 있다. (要綱, 第9條, 1.2項)

2.6. 圖書의 廢棄

每年度末에 圖書擔當係員은 廢棄圖書目錄을 作成하여 敎務課長 및 所長의 檢제를 얻어 用도과로 넘기면 用도과에서 폐기근거장부에 記入하고 廢棄한다.

3. 問題點

3.1. 圖書의 蒐集 및 閱覽

圖書館은 敎育機關이며, 奉仕機關이며, 情報傳達機關이며, 資料提供關이다. S.R. Ranganathan의 5原則을 밀리지 않더라도 圖書는 保存을 위한 것이 아니라 利用 및 人間經驗의 組織의인 傳達를 위한 것이며 萬人을 爲한 것이라는 事實을 周知의 事實이다. 圖書館이 利用者의 數와 範圍를 擴大시키고 資料의 需要를 擴大시키려는 努力은 당연한 일이지만 資料, 情報傳達, 敎養, 奉仕를 기다리는 잠재적인 圖書館利用者에게 圖書館奉仕를 펼 수 없거나 不充分하다고 하면 우리 나라는 圖書館行政制度, 政策, 발전計劃에 크나큰缺點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敎育刑思想에서 수감자를 교화시키는 방법으로는 經濟的인 療法과 心理的인 療法이 있다. 經濟的인 問題는 各種 就役工場에서의 技能工訓練으로 90%정도가 上流生活程度⁽¹⁷⁾이며 약 22%가 無職者인 수감자들은 多少 正當하게 社會에 再適應할 수 있도록 교화하고 있으나, 敎誨, 테크리에이션 및 수감자의 想像力, 理解力, 感性 등에 영향을 주며 心像을 再結合하고 補充하여 人間을 變하게 만드는⁽¹⁸⁾ 心理的 療法은 圖書의 不足으로 圓滑하게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質問紙를 만들어서 國內 22個 교도소 圖書館擔當者에게 교도소 圖書館現況에 대한 應答의 協助를 요청하였을 때 2/3(15個所)의 回答이 왔으며 서울市內 2個所의 圖書擔當者는 직접 한두차례의 面談과 전화질문에 應해줬었다. 여기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교도소에서 느끼는 곤란은 在所者에 비해서 藏書의 絕對的인 不足이었다. 대부분의 교도소가 政府豫算中 圖書構入費의 과소로 필요한 圖書도 살 수 없는 형편이며 受領, 寄贈圖書도 極少量인 반면에 재소자의 越等히 많은 數와 강한 讀書熱로 안타까와하고 있으며 어떤 교도소는 온당히 廢棄해야 할 앞뒤 수폐지가 없는 책도 그대로 閱讀시키고 있는 형편이며 또 어떤 교도소는 많은 사람이 원하는 책은 단 한편밖에 없기때문에 열독신청을 한 後 1~2個月이 지나야 閱讀할 수 있는 상황이라 複本의 아쉬움을 호소하고있으며 工場의 就役으로 인한 그 主題專門圖書가 絶실히 필요하나 단 한편도 없는 교도소도 있는 실정이다.

圖書의 增加狀況을 보자, 법무부 법무행정 1970. pp. 163-4의 1960. 12. 31현재 敎化圖書의 統計와 質問紙回答의 통계를 比較해보면 교도소마다 상당한 차이는 보이는 하나 '69-'74까지 한 교도소의 年平均增加率은 117卷으로서 1%에 지나지않을 뿐이다. 이 增加의 內容을 宗教團體의 宗教書籍, 雜誌社들의 류는 雜誌와 圖書등의 기증과 少量의 受領圖書일뿐 가장 重要한 所自體構入圖書나 委託構入圖書의 數는 무시해도 좋을만 한 數量이라 한다. 일선 교정적 도서담당 계원들은 “교정이란 비틀어진 사람을 바로 고친다는 말이다. 이들은 많은 敎養書籍이나 良書를 대함으로써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 많은 良書가 絶실히 要望된다”고 한정된 圖書로서의 敎化事業의 苦哀를 異口同聲으로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3,5圖書의 閱覽에서 미결수는 언제나 圖書閱讀申請과 閱讀을 할 수있다고 했으나 그것은 형식이 지나지않을 뿐 실제로는 人間, 物的 制度的인 制約을 받고있다. “그들의 유일한 소일거리 는 讀書인데 이것도 窓門을 통해 빛이 들어오는 낮에만 가능할 뿐이다. 밤에는 감방 한 가운데 높이달린 희미한 30축 電球불빛으로 讀書하기에 不充分하다는 것이다⁽¹⁹⁾는 교도소 탐방기사들은 모든 여건들을 잘 나타내고 있다.

少年院의 경우, 少年범죄의 원인 生存權에서 버림받은 經濟的인 不安定, 價値觀의 混同, 精神的인 결함등이며 이의 敎化 및 예방은 情緒 및 道義敎育의 강화에 있으며 이들을 위한 良書의 確保는 時急하다. 少年院生들의 독서열은 成人교도소의 2배 이상이며 受領, 寄贈, 構入圖書로는 그 需要를 尙당하기 힘들어서 성인 교도소 圖書擔當者처럼 學校, 宗教團體, 社會團體, 篤

志家 등의 寄贈을 간절히 바라고있긴 하지만 여건과 의욕의 不備로 積極인 活動을 펴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도소 圖書館들은 加增되는 圖書需要를 보고만 있고 寄贈되는 少量의 圖書를 앉아서 접수만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의 일정량의 圖書蒐集計劃을 세우고 그計劃의 達成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즉 自體圖書構入費를 制度的으로, 積極的으로 늘여 가야만 할 것이고, 활발한 圖書寄贈依賴活動으로 各大學이나 公共圖書館, 特殊圖書館 등의 폐기 등의 圖書中에서 필요한 책을 인수받을 뿐만 아니라 政府나 교도소의 체면의 問題가 아니라 수감자를 위한 問題로서 寄贈依賴廣告物 배스콤을 통해 廣範圍하게 던져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교도소 圖書館에 대한 公共圖書館 貸借制度的 制度的인 뒷받침이 絶對히 必要하다. 加增되는 借者들의 讀書欲求를 보아 못한 일부 교도소 圖書館에서는 시립종로도서관에서 200卷 20日單位로 移動文庫를 유지하고 있으나 卷數의 過少와 反納日의 축박으로 充分한 奉仕가 되고 있지 못하다. 圖書擔當者는 500卷單位로 1個月의 貸借라면 敎化事業에 甚大인 도움이 되리라고 말하고 있다. 一部の 교도소 뿐만 아니라 全國의 교도소 圖書館에 各各의 地域公共圖書館은 貸借活動이나 物心兩面 協助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한 要綱 第 9.12.13條에서 본래와 같이 수감자에게 圖書閱覽貸出反納의 절차가 너무나 복잡하다. 한편의 책을 한 사람에게 대출하는데 圖書貸與許可簿, 圖書記錄카드, 圖書閱讀申請書, 閱讀許可證 또 私冊이면 私冊台帳까지 거쳐야 하며 반납하는데 圖書反納申請書 및 上記의 書類를 거쳐야 한다. 수감자는 연필을 잡는 것도 허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담당직원이 모두 記錄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떤 교도소 圖書擔當職員이 지적했듯이 貸出카드한장으로 充分하지 않을까.

3.2. 圖書의 整理 및 奉仕

前述했지만 實質的인 교도소 圖書擔當者는 矯正職 5級甲, 乙이며 정규圖書館教育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實際的이고 高次的인 圖書奉仕가 이루어지거나 體系的인 整理業務가 行해지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교도행정적 여건은 이들의 奉仕마저 受容할 수 없는 實情이다. 그러나, 현재 쓰고있는 分類法은 要綱에 의거한 것이지만 2개 교도소에서는 DDC의 변형을 쓰고있고 이는 藏書의 增加로 要綱의 分類로는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대다수 교도소 圖書館 藏書가 이들같이 늘어간다면 이 때에는 새로운 分類法의 檢索方法으로 바뀌어야 하며 奉仕方法의 模索과 奉仕의 當연하고 다양한 요구로 圖書館奉仕는 보다 복잡다기해져서 圖書擔當者의 圖書館教育을 실시하는 것이 어떠한가 라는 問題가 擡頭될 것이다. 결국, 정규도서관학을 전공한 司書가

교도소 圖書館의 司書의 職責을 교정직대신 담당해야 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敎育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問題는 아직 遙遠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社會사람들로부터 뿐만 아니라 圖書館界에서 무관심 내지 소의당하고 있는 교도소 圖書館에 積極인 後援과 함께 면밀한 관찰이 絶對히 要望된다. 行政當局은 10년후의 교도소 圖書館을 위하여 計劃과 援助를 아끼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司書들도 교도소 System를 觀察하고 연구하여 교도소 圖書館의 具體的인 模型 및 發展計劃을 세우고 이를 實現하기 위하여 能動的인 活動을 펴야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수감자들에게까지 圖書館奉仕를 擴大하는 것은 교도소밖의 일반 司書들의 責任이자 使命이며 교도소 圖書館을 昂揚하는 것은 교도소機關의 責任이기 때문이다. 교도소機關, 公共圖書館, 그리고 司書들의 活動이나 行動이 一致團結된다면 우리나라 교도소 圖書館은 새로운 轉換期를 갖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註)

- (1) 대한민국, 行刑法, 第1條.
- (2) 경성보호회, 한국 경성보호 제도의 개선, 1971, p.17
- (3) Donald E. Stedius, "A Roundelay for Attica and other Prison Libraries Based on an Old song", Willson Lib. Bulletin (November 1, 1971), pp.246-7.
- (4) 金京一, 特殊圖書館(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69), p.1
- (5) Ada Winifred Johns, Special Libraries (New York: The Scarecrow Press, 1968), p.11
- (6) Edward G. Strable, Special Libraries (New York: Special Lib. Asso., 1966), pp.1-3.
- (7) Celeste Macleod, "Prison Law Libraries and you", Lib. Journal (November 1, 1972), p.3540.
- (8) 대한민국, 行刑法, 第33條.
- (9) 교정수전처우제도에 의해서 수형자를 1급수에서 4급수까지 나눈다(자세한 것은 법무부, 법무행정, 1970, pp. 140-141. 을 보시오.)
- (10) 대검찰청, 범죄분석(서울, 대검찰청, 1974. 1/4분기), p.p.122-123.
- (11) 上揭書, pp. 228-229.
- (12) "형무소"世界百科大辭典, 12卷(서울, 學園社, 1967), p.402.
- (13) 법무부, 법무행정(서울, 법무부, 1970), p.145.
- (14) 대한민국, 行刑法, 第39條, 2,3項.
- (15) 교도소에 따라서 宗教, 文學, 政治, 經濟, 敎養, 實業技術, 敎育 등으로 分類하기도 하여, 宗教, 敎養, 文學, 法律, 實業, 기타로 分類하기도 하여 2.2교도소 소장도서관의 각 項目처럼 分類하기도 한다. 또 수원교도소(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74년 11월 23일 현재 私有圖書 4,500卷 敎化圖書 6,187卷) 서울구치소(私有圖書 2,670卷, 敎化圖書 3,790卷) 등은 DDC의 변형을 使用한다. 少年院의 경우에는 宗教, 文學, 敎養, 偉人傳, 學習資料, 기타로 分類한다.
- (16) 법무부, 법무행정, 1970, p.167.
- (17) 대검찰청, 범죄분석, pp.236-238.
- (18) 北島武彦(編著), 圖書館奉仕論(東京, 理想社, 1971), p.138
- (19) 東亞日報, 1974년 11월 8일字, 4面.